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2003년 2월 6일부터 산업자원부령 제195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제도연구실

◎ 산업자원부령 제195호

▣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시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2. 3. 25, 법률 제 6673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양성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간을 1주로 하는 등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의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의 기술평가기준 및 협상방법 등을 정함(안 제27조의2·제27조의3·별표 1의3 내지 별표 1의6 신설).

다.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도·양수의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설계업·감리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	제3조(신기술지정신청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서류</p> <p>2.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전망에 관한 서류</p> <p>3. 기타 시험결과등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p> <p>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삭 제></p>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1. 신기술의 명칭</p> <p>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p> <p>3. 신기술의 개발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p> <p>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p> <p>5. 기타 신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⑤신기술개발자는 당해 연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①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 적용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부터 당해 전력시설물</p>	<p>제5조(신기술지정증서 등) ①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p> <p>2. 신기술지정증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p>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의 기간등은 당해 신기술의 고시일부터 5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신기술지정의 취소)</p> <p>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p> <p>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력시설물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신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6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p> <p>2. 신기술 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6조의2(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p> <p>②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p>

현행	개정안
	<p>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전력기술인(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등) ①전력기술인은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전력기술인의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4. 증명사진(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p> <p>③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신 설></p>	
<p>③·④(생략)</p>	
<p>제9조(경력산정기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등)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p>

현행	개정안
<p>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 절차)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 절차)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발급의 경우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나. 가목외의 전력기술인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잃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증명사진</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의</p>	<p>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 ----- ----- ----- -----법 제14조</p>

현행	개정안
	<p>역서 사본</p> <p>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p> <p>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p> <p>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인접한 지역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변경신고의 경우</p> <p>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p> <p>(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p> <p>(3)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p> <p>(1)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p> <p>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다.</p>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

현행	개정안
<p>29호서식의 설계업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의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사본)</p> <p>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3. <삭 제></p> <p>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5.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p> <p>②(생략)</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p>	<p>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표자·상호·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p> <p>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p> <p>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p> <p>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p> <p>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 원본</p> <p>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p> <p>5. 영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p> <p>②(현행과 같음)</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p>

현행	개정안
교부한 때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부한 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때-
제27조(등록변경신고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제25조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단체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시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현행	개정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시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단체는 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신설>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 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

현행	개정안
	<p>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⑥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27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의</p>
<p><신설></p>	

현행	개정안
<p>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p>	<p>규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p> <p>2. 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p> <p>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p>

현행	개정안
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 원본(철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현행	개정안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양도·양수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마. 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2.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5조제2항의 규정은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 ----- ----- ----- ----- ----- ----- -----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당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2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제6조의2제1항관련)

1. 교육의 종류·대상

가. 양성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경력 또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

나. 전문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로서 상위 등급을 받은 자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교육 • 전기관계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1주 (40시간이상)
나.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교육 • 전기관계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 	1주 (40시간이상)

비 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른 전기관련 교육기관에서 제2호의 표의 교육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 2제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자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자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 2제1항제2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 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업체의 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자용역과의 관련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전자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 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7.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8.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pm 20\%$ 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참여업체 및 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나. 참여감리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감리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자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자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의5]

설계업자의 기술평가기준(제27조의3제1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별표 1의3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기법	70 (25)	과업수행 세부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 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작성기준	(30)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선정의 적정성, 전기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전력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환경 요인에 대한 검토 및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8)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기술자료활용 및 설계 기술향상	(7)	보유장비,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비 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 기준은 ±2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별표 1의6]

감리업자의 기술평가기준(제27조의3제2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15 (5)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문제점 및대책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조직구성의 적정성	15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 사항	55 (20)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예방 및 비상상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종별 검사·주요기자재의 검사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공정관리 방안	(5)	및 관리방안 수립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지원체계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사, 관련 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주요 공종별 보고·협업체계) 구축 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 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비 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

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별표 2]

설계업·감리업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9조 제1항관련)

평가항목	해당조문	평가방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법 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법 제16조제3호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2월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4월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당해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제		영업정지 6월

평가항목	해당조문	평가방법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6조제 4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16조제 6호	
가. 1차 나. 2차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무를 담당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납부한다.

※ 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납부한다

※ 별지 서식은 지면 관계상 협회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3. 4. 8(화) ~ 4. 11(금)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관

참관일시 : 매일 10:00 ~ 17:00

전시품목 : 전력전자 기기 및 부품 , 동력설

비, 전력변환·제어장치, 반송설비, 발전설비, 피뢰 및 써지흡수설비, 송변전설비, 방재설비, 수배전설비, 감시제어설비, 전원설비, 계측·진단·시험시스템, 배전설비, 전기공사 기자재 및 장비, 조명설비, 전열설비, 기타관련 기자재

창립 최초로 협회가 주최하여 개최하는 본 전시회는 우리 협회의 위상과 전력기술인의 권위와 긍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관을 기대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 희 평

[별표 3]

수수료기준(제34조관련)

구 분	수수료
1. 신기술의 지정신청	
가. 지정신청	1만원/건
나. 전담기관심사	3백만원/건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1만원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5천원
4. 감리원수첩의 발급	1만 3천원
5. 감리원수첩의 갱신·재발급	5천원

비 고

- 제1호가목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제1호나목의 전담기관심사 수수료는 심사업